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41
----------	-------

발의연월일 : 2025. 8. 19.

발 의 자 : 정성국 · 서천호 · 김용태
서지영 · 곽규택 · 김대식
김민전 · 김예지 · 우재준
최형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활동의 교류,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교원을 국가기관, 교육기관 등으로 파견근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인 교원과는 달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파견 대상의 범위에 유치원·대학의 교원은 제외하고 파견 가능 업무 또는 기관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이 국가적 교육정책에 참여하거나 기타 외부 기관에 연수하는 기회가 차단되어 전문성을 향상할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유치원·대학의 교원도 파견근무를 갈 수 있게 하고, 파견이 가능한 업무나 기관을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파견근무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공립·사립 교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제1항).

법률 제 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784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1항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활동의 교류, 업무”를 “교원의 임용권자는 국가적 사업의 수행, 교육활동의 교류 또는 그 업무”로, “연구기관에”를 “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784호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 제55조의5(파견근무) ① 사립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u>교육활동의 교류, 업무 수행</u>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교원을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공무원 및 다른 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법률 제20784호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 제55조의5(파견근무) ① ----- <u>교원의 임용권자는 국가적 사업의 수행, 교육활동의 교류 또는 그 업무</u>----- ----- ----- ----- ----- ----- ----- ----- ----- -----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